

<p>사용승인으로 하며, 제13조를 제11조로 수정 동의코자 합니다.</p> <p>○委員長 劉大運 방금 李達源委員께서 서울特別市象徴物條例案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 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p> <p>(「재청입니다」하는 委員 있음)</p> <p>재청이 있으므로 李達源委員이 제안하신 수 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p>(議事棒 3打)</p> <p>李達源委員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다 른 의견 없으십니까?</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李達源委員이 제안하 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 분, 이의 없으시죠?</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이의가 없으므로 李達源委員이 제안한 수정 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여 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p> <p>(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안에대한수정안</p> <p>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p> <p>안 제5조의 제목 “상징물의 관리”를 “상징 물의 관리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②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 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이미지개발기본편람 및 응용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p> <p>안 제6조를 삭제한다.</p> <p>안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동조의 제목 “상 징물관련사업”을 “상징물관련사업 등”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p> <p>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p> <p>안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제10 조를 제9조로 하고, 제9조제1항제2호중 “제 7조”를 “제6조”로 하며, 동조제3항에 제3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3.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안 제11조를 삭제한다.</p> <p>안 제12조를 제10조로 하고, 동조중 “제8조” 를 “제7조”로 하며, “사용허가”를 “사용승 인”으로 한다.</p> <p>안 제13조를 제11조로 한다.</p> <p>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안</p>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 캐릭터, 동 · 식물 등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 이라 함은 시를 상징하는 휘장,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p> <p>제 3 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 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휘장 : 별표 1 2. 캐릭터 : 별표 2 3. 시화(市花) : 개나리 4. 시목(市木) : 은행나무 5. 시조(市鳥) : 까치 <p>제 4 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서울특별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 론수렴 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상징물관리위 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p> <p>제 5 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시장은 상징물 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 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p> <p>②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 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이미지개발기본편람 및 응용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p> <p>제 6 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시장은 상징물 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 7 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상징물을 활용 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p>
---	--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 8 조(사용료) ①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시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 시기·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행사 등에 시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④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서울특별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시장이 임명하는 시공무원
3. 서울특별시회의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홍보담당관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상징물인 휘장 또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3조제1호와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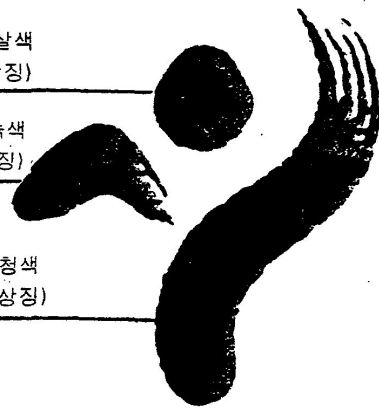
그림 1. 휘장

(1)기본형

서울살색
(해상징)

서울녹색
(산상징)

서울청색
(한강상징)



(2)휘장의 의미

휘장은 한글 “서울”을 서울의 산·해·한강으로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 신명나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인간 중심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을 상징하고, 자연·인간·도시의 맥락속에서 녹색 산은 환경사랑, 청색 한강은 역사와 활력, 가운데 해는 미래의 비전과 희망을 함축한다.

그림 2. 작도법(그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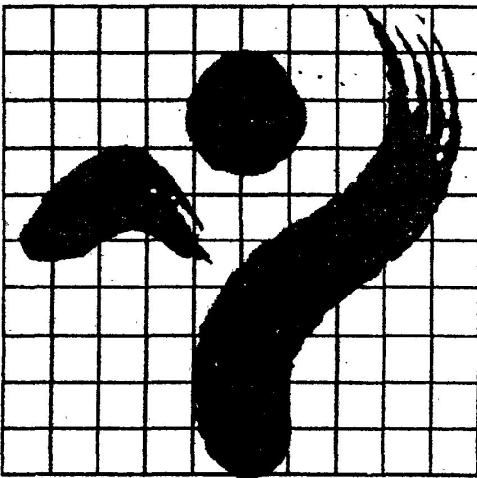





그림 3. 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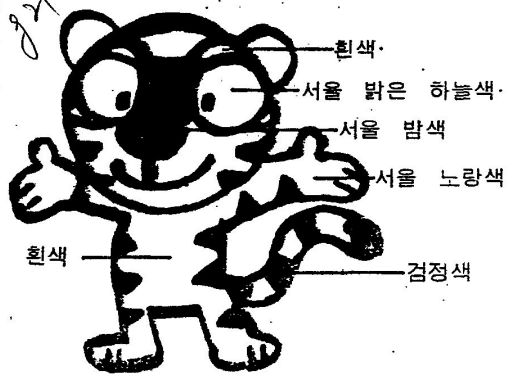
(A) 
 서울 청색 : 별색-PANTONE 300C
 (A) 4원색-C100%+M40%
 (C)

(B)  
 서울녹색 : 별색-PANTONE 3272C
 (B) 4원색-C100%+Y60%
 서울살색 : 별색-PANTONE 708C
 (C) 4원색-M50%+Y30%

[별표 2](제3조제2호와 관련)

그림 1. 캐릭터

(1)기본형




(2)캐릭터 이름 : 호랑이

(3)캐릭터 의미

굳건한 기상, 열린마음, 높은 이상, 밝은 마음을 나타내고 전체적으로 ‘자랑스런 서울시민의 모습’을 상징한다.

그림 2. 색상

(A)서울 노랑 : 별색-PANTONE 130C

(B) 
 (B)서울 밤색 : 별색-PANTONE 470C

(C)서울 밝은 하늘색 : 별색-PANTONE 230C

2. 1998年度公報官所管業務報告의件

(15時 08分)

○委員長 劉大運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公報官께서는 업무보고의 건은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유인물로 대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대목에 한해서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崔永福 알겠습니다.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報告)

I. '98.弘報戰略

1. 推進方向

시민본위의 열린시정 구현